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승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181
----------	-------

발의연월일 : 2026. 6. 11.

발 의 자 : 강승규 · 김은혜 · 박수영
임종득 · 이양수 · 이철규
서명옥 · 김희정 · 박덕흠
박상웅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응급환자 이송업을 하려는 자에게 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허가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실질적인 재무 건전성이나 자본의 안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은 미비한 실정임. 이로 인하여 영세한 이송업자가 난립하고 있으며, 재무상태가 부실한 일부 이송업자들은 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후 장비를 방치하거나 응급구조사 등 필수 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지 않는 등 응급이송의 질적 저하를 유발하고 있음.

응급이송은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서비스인만큼 이송업자가 응급이송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갖추었는지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바 이송업 허가 단계에서부터 사업자의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응급환자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에게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송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응급환자가 더욱 안전하게 이송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2항 신설 등).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 전단 중 “시설”을 “시설 및 자본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전단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시설”을 “시설 및 자본금”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에 대한 진단을 받고 그 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2.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문경영진단기관

제55조제3항제1호 중 “제5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제5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제62조제1항제5호 중 “제51조제3항”을 “제51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단보고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이송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부터 적용한다.

② · ③ (생략)

④ 시·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변경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⑥ 이송업자가 제3항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⑤ -----제4항-----

-----.

⑥ -----제5항-----

-----.

⑦ -----제4항-----

-----.

제53조, 제54조제3항, 제54조의2 또는 제59조를 위반한 경우	----- ----- -----
2. ~ 6. (생략)	2. ~ 6.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62조(과태료) ① ----- ----- -----.
1. ~ 4의4. (생략)	1. ~ 4의4. (현행과 같음)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51조제4항----- ----- -----
6. · 7. (생략)	6.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